

노 천 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cheon4roh@hanmail.net



2009년도 우리회 주요 추진사업

- 정기총회보고자료 중에서 -

2010년도 우리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님들께 우리회가 지난해 추진하였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전체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추진

이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였으나 유관 기관과 단체의 반대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우리회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관련 축산단체들도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약사회가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2010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 추진

우리회는 수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립추진위원장(이흥식 서울대 명예교수)을 선임하였고 사무실도 개설하였습니다. 설립추진위원장이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인증원 설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그 외에 수의과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여 인증원 설립기준과 요건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고 의학 및 치의학교육평가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정부의 애완동물진료 부가세부과계획 철회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애완동물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회는 신속하게 TFT를 만들어 반대 현수막 달기 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특별성금모금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기재부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우리 의견이 기재부에 전달되게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재부가 부가세 부과를 철회하였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재론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씨가 완전히 없어 질 때까지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운동이 전개될 때는 회원님들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4. 수의사법의 개정으로 수의사의 업무범위 확장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건강증진”을 추가하고 취급동물 중에 “가금”을 “조류”로, “어패류”를 “수생동물”로 바꾸어 수의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혔습니다.

5. 수의사법에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

이 법의 신설에 대하여 많은 개업회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에서 동물병원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직접 관리하고자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회원들을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의사법에 위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향후 이 법과 관련하여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므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 표준진료매뉴얼 제작 진행

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분쟁 완화 및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하여 표준진료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이염, 중성화, 중이염 및 내이염, 치아질환, 개피부염, 구토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하였습니다.

7. 일반수산직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에 수의사도 포함

정부가 일반수산직 5, 6, 7급 공무원을 특별채용 시에 수산질병관리사에게만 자격을 주었으나 우리회가 요구하여 수의사에게도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지난해 10명의 수의사가 임용되었습니다.

8. 인체용 마약류약품 수의사도 사용 가능

그 동안 수의사들이 진료시 인체용 마약류 약품을 사용할 수 없어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2009년 9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의사도 동물진료를 위하여 동물용과 인체용 구별 없이 모든 마약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우리회로 회신하여 왔습니다.

9. 소 불법 거세행위에 대한 대응

무자격자가 거세시술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료회사 직원들이 마케팅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불법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한국사료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회원을 계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각 시·도 지부에도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10. 동물병원도 돼지썩코백신 판매처에 포함

정부는 돼지열병청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돼지썩코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열백신은 무상지원되지만 썩코백신은 대략 백신비의 40%를 축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백신판매업소에 동물병원을 배제시켰으나 우리회에서 요구하여 포함시켰습니다.

11. 애완동물판매 후, 질병·폐사 발생시 환불 및 교환 기간 현행 15일 유지

애완견 판매단체에서 환불 및 교환기간을 15일은 너무 길기 때문에 5일로 단축하여 줄 것을 건의해 오자,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려고 함에 따라 우리회에서 전염성 질환의 잠복기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12. 법인동물병원시설기준 현행유지

민원인이 법인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으나 우리회는 법인동물병원의 당초 개설취지 실현과 개설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현행유지토록 하였습니다.

13. 동물병원에 천연기념물 치료경비 1억2천만원 지급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매년 일정 예산을 보조받아 천연기념물 치료소에서 청구한 천연기념물 진료비를 분기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14. 아토피, 천식 예방 리플릿 등에 “애완동물사육금지”문구 삭제요구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발행한 리플릿에 천식 및 아토피예방을 위하여 애완동물 사육금지를 권고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는 일반인들이 애완동물을 기피하지 않도록 추후 홍보자료에서 이 같은 문구가 제외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바랍니다.

15. 국제협력사업 진행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2011년 한국 개최)와 세계양돈수의사대회(2012년 한국 개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지원하고 있으며, OIE 수의학교육컨퍼런스, 아시아수의사회이사회 그리고 한·일·대만 교류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전년도 주요 사업추진결과보고를 마치며, 올해 우리회가 추진할 주요사업은 4월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